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188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0. 5.)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자치구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라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요청에 협조하고, 사업의 대상, 종류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 정의 변경(안 제2조)

나. 적용 대상 정비(안 제3조)

다.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포함(안 제6조)

라. 후생복지시설 확보·운영 가능 명시(안 제6조)

마.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 지원 등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8. 17. ~ 2023. 9. 6. (20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¹⁾에 따라 직원 후생 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1호 : “소속공무원”의 범위에서 ‘구의회사무국’를 삭제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²⁾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임.
 - 안 제3조제2항 : 적용범위 관련 사항으로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적용 대상³⁾에 포함하였으며, 공무원, 청원경찰 등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1)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2)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2021년 12월 31일 체결된 「성북구-성북구의회 인사운영협약서」 제4조(협력분야)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휴양시설 등의 후생 제도가 통합 운영되고 있음.

- 안 제3조제3항 :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한한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 안 제6조는 기존 후생복지시설에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임.
- 안 제7조제6,7호 후생복지사업 중 기 시행중인 건강검진비 지원,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가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지원 및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